

##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6 중 “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7조의2제1항”을 “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6조제1항”으로, “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제1호”를 “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제3호가목 전단 중 “이상.”를 “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7이상(관련자산 아파트) 또는 100분의 10이상(관련자산 아파트 이외)”을 “10이상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2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 (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 및 보고)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3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.

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시 이사회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.

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
2. 제1호의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

④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제3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,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대손충당금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0조 (위기상황분석의 실시) 상호저축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2조제2항제6호 중 “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45조제3항 전단 중 “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”를 “검사시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종합검사이외”를 “검사이외”로 한다.

제62조 중 “중소기업청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”로 한다.

별표9 제2호사목 중 “시점”을 “시정”으로, “나목”을 “다목”으로 한다.

별표9 제6호다목(5) 중 “나목”을 “다목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22.1.1.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의6(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호저축은행) 법 제12조제1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”이란 「<u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 제3호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.</p> <p>제37조(회계기준등) ① 「<u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</u>」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「<u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(이하 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38조(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)</p>	<p>제22조의6(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호저축은행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 제3호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7조(회계기준등) ① 「<u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</u>」 제6조제1항----- ----- ----- 「<u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제1항제1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8조(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)</p>

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~ 2. (생략)

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가. “정상”분류 자산의 100분의 2(최초취급 후 1년이상 경과시에는 100분의 3) 이상. 다만 최초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이 BBB- 또는 A3-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경우에는 100분의 0.5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나. “요주의”분류 자산의 100분의 7이상(관련자산 아파트) 또는 100분의 10이상(관련자산 아파트 이외)

다. ~ 마. (생략)

4. ~ 8. (생략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가. -----  
-----  
----- 이상  
<후단 삭제>

나. -----  
--- 10이상

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생략)

<신설>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38조의2 (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 및 보고)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3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.

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시 이사회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.

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 
적립기준

2. 제1호의 기준에 따른 대손충  
당금등 적립결과

④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제3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,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

<신 설>

제42조(경영공시 등) ① (생 략)

②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 략)

6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

③ ~ ⑥ (생 략)

제45조(경영실태분석 및 평가) ①

· ② (생 략)

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.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(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)로 제5항의

행에 대하여 특정 대손충당금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0조 (위기상황분석의 실시) 상

호저축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2조(경영공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-----  
-----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경영실태분석 및 평가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 
----- 검사시  
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. ----- 검사이  
외-----  
-----

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~ ⑦ (생략)

제62조(차입대상) 법 제25조의9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“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”라 함은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.

-----  
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62조(차입대상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중소벤처기업부, -----.